

담당	책임자

100세신탁 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뒷면의 100세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계약일		계약명		계약번호	
제2조	신탁금액	금	원		
제3조	신탁기간	년	월	일 ~	년
제4조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생전수익자	주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명 :	인 (서명)
	신탁원본 및 이익의 사후수익자	위탁자가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에서 지정하는 자로, 위탁자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함			
제6조	운용지시 대리인	위탁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용내역 통보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제8조	지급청구대리인	위탁자가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에서 지정하는 자			
제9조	특별지급	[별도 신청서(수탁자 양식)]를 제출하여 특별지급(지급청구대리인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 개시 신청			
제15조	신탁보수	<input type="checkbox"/> 계좌관리보수= 신탁원본 평균잔액 × 연()% × 신탁기간(일수) ÷ 365 특별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연()%로 변경됨 <input type="checkbox"/> 운용보수는 개별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한 운용자산별 운용보수에 따른다. <input type="checkbox"/> 미운용자산(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 고유계정대 평균잔액 × 연()% × 미운용기간(일수) ÷ 365 <input type="checkbox"/> 집행보수= 위탁자 사망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지급시 신탁잔액 × () %			
제27조	특약				

※ 뒷면의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의 신탁자금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 세부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뒷면 하단의 위탁자란 자필 서명 및 날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책임자

100세신탁 계약서

■ 운용지시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신탁자금 운용방법(별표1)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세부내용		
위탁자	운용대상		
	위험도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세부내용		
	운용대상		
대리인	주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명 :	인 (서명)
수탁자	주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명 :	인 (서명)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100세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0세신탁 계약서

3. 신탁계약에서 정한 생전 및 사후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4. 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5.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자신의 계약을 청구하여 그 재산이 모두 이전된 경우
6. 밖에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 운용을 중단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 발생일 현재 신탁재산 운용현상대로 유지한다.
 -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는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⑦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조치를 한다.
 - ⑧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보수를 사후수익자로부터 받는다.
 - ⑨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의 만기나 다른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계약의 금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나 다른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 ⑩ 한국은행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 (청약의 철회)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작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청약철회의 기간내에 예탁한 금전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만법 제19조에 따른 법정기자율을 과한 금액을 일정으로 계산한 연체기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2조 (위법계약의 해지)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양도 및 담보제공)

-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기존 고액에 대한 변경액만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기별 전에 위탁자·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 이아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환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작·정비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경우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된다.
-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은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압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4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변경전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에경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탁계약서이어야 함에서는 「계약서」라 함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고객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환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에게 약관을 조회하고자 다른 로그인(회원) 출력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 체계적 평가를 위하여 위탁자의 계약체결 관련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신건강증서, 진단서, 소견서 등)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제25조 (사고신고 등)

-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불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시·거래안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이자기 할 때
 2. 위탁자, 사후수익자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시장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 (인장장고)

- 위탁자가 거래안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적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겨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치·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특약)

-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 (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 「관계법규등」이라고 함)을 준수한다.

제29조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송이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 (관계법규등 준수)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2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다.

년 월 일

위탁자 및 수익자 주 소: _____
생년월일/사업자번호: _____
성 명: _____ (인/서명)

수탁자 주 소: _____
성 명: _____ (인/서명)
부 (점) 장: _____ (인/서명)

[별표1]

신탁자금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자금 운용방법(1. 내지 31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	12. 자유금리기여금(*1)	23.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2. 쿨론	13. 표지이음	24. 유가증권의 옵션
3. 환매조건부채권	14. 증거이음	25. 수익증권
4. 국채	15. 별법이음	26. 장외파생상품
5. 통화인정증권	16. 양도성예금증서	27. ELS
6. 기타 금융채	17. 신카드채권	28. ETF
7. 지방채	18. 개발신탁수익증권	29. ELB
8. 사채	19. 공시채형수익증권	30. DLB
9. 주식	20. 주식형수익증권	31. 그 밖의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2)
10. 외화유가증권	21. 기타의 유가증권	
11. 보증여음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 시 해당지분만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화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별표2]

통장금전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 100세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신탁재산 운용방법 [별표1]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